

# 시장평균환율제 운용방안

- 재무부 -

## I. 시장평균환율제

### 1. 배경 및 추진경위

- 1980년 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꼭 10년동안 사용해 오던 현행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의한 환율결정방식을 폐지하고, 1990년 3월 1일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채택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환율제도의 개편이 국민경제 및 대외거래에 미치는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그동안
  - 대고객환율 자율화, 외환집중제도 개선 등 외환시장 기능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여건조성과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 관계전문가와 긴밀한 협의 및 검토과정을 거친후
  - '90. 2. 1~2. 10까지 재무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외국환은행 관계자 40명이 참여하는 모의연습 결과를 토대로 시장평균환율제도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 시장평균환율은 현재의 한국은행 집중기준율과 같이,
  - 외국환은행과 고객과의 외환거래나, 은행간 외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 원화와 美달러貨의 환율임.

#### (2) 시장평균환율의 결정

- 가. 시장평균환율의 결정요인
  - 현행 환율제도인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의 對美 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주요국의 국제통화시세 변동에 따라 결정되나,
  -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의 對美 달러환율은 기본적으로

신·구제도하의 환율 결정요인 비교

환율결정변수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
주된 변수	국제통화시세의 변동	은행간시장에서의 외환수급 현황
종속변수	외환수급상황 (경상수지 흑자 규모) 내외물가 및 금리 차등	국제통화시세의 변동 내외물가 및 금리 차등

### 2. 시장평균환율제도 세부운용 방안

#### (1) 시장평균환율의 의의

은행간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됨.

- 따라서, 외환공급이 수요보다 크면 외환시세가 하락, 즉 원화절상 요인이 되고 반대로 외환수요가 많으면 원화절하 요인이 됨.

나. 시장평균환율의 결정방법

- 전날 모든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한 원 / 달러 현물환거래換率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 당일 시장평균환율을 결정함.
  - 외환매매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사단법인)내의 자금중개실에서 산출하여
  - 매일 09:00에 AP. 로이터 화면을 통해 전날 외환 시장에서의 시간대별 換率 및 체결물량과 함께 당일 외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시장평균환율을 고시하고 換率을 자동응답장치에 입력함.(☎572-0011, 77#)
  - ※ 현행 바스켓換率은 한은총재가 산출하여 고시함.

시장평균환율 산출(예)

(단위: 천달러)

거래환율(A)	거래량(B)	거래금액(C) = A×B
₩680.00 : U\$ 1	10,000	6,800,000
₩679.00 : U\$ 1	10,000	6,790,000
₩677.50 : U\$ 1	20,000	13,550,000
計	40,000	27,140,000
시장 평균 환율	C/B=27,140,000/40,000=678.50원	

⇒ 당일의 「시장평균환율」은 ₩678.50=U\$1로 고시됨.

다. 월요일의 시장평균환율

- 국내 외환시장이 토요일에는 열리지 않고 있으므로 월요일 시장평균換率은 현재와 같이 토요일 換率(금융요일의 은행간 거래에 의한 산출)과 동일하게 함.
- 라. 자금중개실 거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은 날 다음 날의 시장평균환율
  - 국제외환시장이 휴장이거나 지속적인 절상(또는 절하) 기대심리, 또는 투기적인 요인 등의 영향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경우에는 그날의 거래 換率이 시장평균환율로의 대표성이 떨어짐.
  - 예를 들어 '89. 12. 13경우 7백만달러(평상시의 7

%)가 거래됨.

- 따라서 은행간 거래규모가 전년 일평균거래 규모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전일자 거래와 당일자 거래실적을 합쳐서 다음날의 시장평균환율을 산출함.
  - '89년중 하루평균거래규모: 96백만달러
  - '89년중 하루 거래 규모가 48백만달러 미만 일수: 총 242일중 23일
- 은행간 외화시장 참여자
  - 시장평균환율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은행간 원화 / 달러 貨 거래에는 90개 모든 외국환은행이 아무 차별없이 참여하게 됨.
    - 외국환은행: 시중은행(11), 특수은행(9), 지방은행(10), 외국은행(53), 중금사(6), 한국은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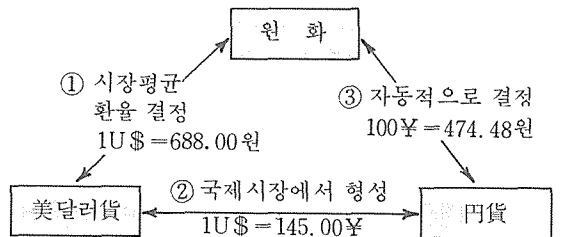
(3) 원화와 円貨, 원화와 마르크貨, 기타통화의 환율결정

- 가. 대고객거래에 기준이 되는 기타통화 換率결정
  - 원화와 日本 円貨(¥)의 換率은 현재와 같이 원화와 美 달러貨의 換率(시장평균환율)을 가지고 국제외환 시장에서 형성된 美 달러貨와 円貨와의 환율을 나누어서 결정함.

〈예〉

$$W / ¥100 = \frac{\text{시장평균환율}(W / U\$)}{\text{달러貨와 円貨와의 환율}(¥ / U\$)}$$

$$= \frac{688.00}{145.00} = 474.48\text{원}$$



- 우리나라는 물론 臺灣, 濠洲, 日本 등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도 美 달러화 이외의 기타통화 換率은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있음.
  - 나. 대고객거래에 기준이 되는 기타통화 換率의 고시
  - 시장평균환율과 같이 금융결제원내의 자금중개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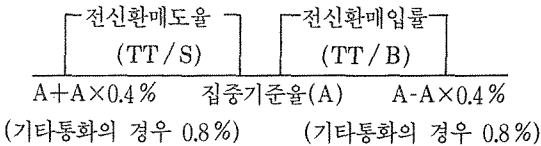
09:00에 고시

- AP. 로이터 화면을 통해 고시
- 자동응답장치에 입력(☎ 572-0011, 77#)

(4) 외국환은행의 대고객換率

가. 현행 외국환은행의 대고객환율

- 현재 외국환은행의 전신환매매율은 美달러貨의 경우 집중기준율의 0.4%, 기타통화의 경우 0.8%를 상하한으로 하여 외국환은행이 자율결정하고 있음.
- 전신환매도율의 기준을 이하 거래와 전신환매입율의 기준을 이상 거래는 할 수 없음.



- 현찰매매율은 은행이 현찰조달 비용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음.

나. 새로운 제도하의 대고객환율

- 외국환은행의 대고객換率(전신환매매율)은 현행과 같이 시장평균환율±0.4% 이내(기타통화는 0.8%이내)에서 외국환은행이 자율결정하도록 함.
- 전신환매매율의 시장평균환율 초과거래는 현재와 같이 허용하지 않음.

※ 시장평균환율 제도도 도입함에 따라 전신환매매율의 상하한 band를 계속 설정할 것인지, 시장기능 제고를 위해 그 band폭을 넓힐 필요는 없는지 등 여러가지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였던 바,

- 시장평균환율제도 시행초기에는 換率의 안정화와 새로운 제도의 차질없는 정착이 중요하므로 우선은 현행대로 하고,
- 새로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 그 동안의 시장동향, 대내외적인 반응을 감안하여 대고객換率 자율결정 범위 확대문제를 신중히 검토함.
- 현찰매매율도 현행과 같이 외국환은행의 자율에 맡김 (은행의 현찰조달 비용을 감안하여 통상 집중기준율 ±1.5%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5) 은행간 換率의 하루변동범위 설정

가. 하루변동범위 설정 필요성

- 은행간 換率은 외국환은행간에 외환율을 매매할 때 적용하는 換率로서 현재는 은행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음.
- 은행간 換率은 원화/달러貨 거래환율, 원화/기타 통화 거래환율, 달러화/기타통화 거래환율이 있음.
- 그러나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는 은행간 원화/달러화 거래換率이 곧바로 시장평균환율을 결정하게 되므로 換率의 안정을 위하여는 일정한 은행간換率 변동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하루변동범위

- 은행간 원화/달러화 거래換率의 하루변동범위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換率 자율결정 범위와 마찬가지로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0.4%이내로 설정하고, 추후 필요시 점진적으로 변동범위를 확대해 나감.
- 한편, 시장평균환율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화/기타통화 거래換率 및 달러화/기타통화 거래換率은 현재와 같이 하루변동폭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은행간환율의 하루변동범위를 0.4%로 설정한 이유〉

- 하루변동범위를 크게 설정하면(예 : 1%, 2.25%), 외환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기능이 제고될 수 있으나,
- 현재 우리 업계의 換率적응 능력이나 과거의 換率 하루변동폭을 감안할 때, 갑자기 換率변동폭을 크게하면 換率급변동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 특히 예측능력과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임.
-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는 달리 換率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보유외환도 거의 없고,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환위험 관리기법도 거의 알지 못하여 換率 급변동에 대처할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월초에는 수출이 부진하고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등 거래 관행상 월중에도 換率기복이 많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업이 새로운 換率제도에 적응하여

거래관행이 정립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 우리 은행들도 급격한 換率변동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초기단계에는 업계와 은행의 換率변동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주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하루변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6) 시장평균환율제도 시행일('90. 3. 2)의 시장평균환율

- 시행일 전일('90. 2. 28)자 한국은행이 복수통화바스켓에 의해 고시한 換率을 가지고 은행간거래와 대고객 거래를 시작하게 됨.

## 3. 시장평균환율제도의 기대효과

-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정부 당국에서 換率을 결정하던 고정환율제도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換率이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경제를 더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즉, 중요한 가격정책 변수의 하나인 換率을 국내외환 시장에서의 외환수급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과 국제 금융시장의 연계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이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금융국제화에 기여하게 됨.
- 換率의 가격기능 제고로 날로 늘어가는 대외거래를 원활히 뒷받침하게 됨.
- 또한 시장기능을 반영하는 제도의 운영으로 대외통상 마찰 요인을 완화해 나갈 수 있음.

## 4. 시장평균환율제도 문답풀이

**<문1>** 현행 바스켓환율제도는 무슨 문제가 있어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하려고 하는가.

**<답>** 현행 바스켓換率제도는 사전에 결정된 일정 한 가중치에 의해 주요국 통화가치의 변동을

종합한 후 우리의 국제수지 동향,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금리차, 물가상승률차 등을 반영하여 換率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주요교역국의 통화시세 변동을 골고루 반영하여 적정수준에서 換率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의 성격상 외환의 수요·공급이나 우리경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또한 換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스켓 구성내역을 공개할 수 없게 됨으로써 대내외로부터 換率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의 연계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는 그 연결고리인 換率의 시장기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換率결정 과정에서 우리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시장기능을 제고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새로운 換率제도로 이행하려는 것임.

**<문2>** 換率제도는 국가경제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도이므로 제반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제도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데, 과연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 졌다고 보는가.

**<답>** 우리 경제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이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위상을 살펴볼 때, 이제는 우리도 換率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로 이행할 필요가 있고 여건도 성숙되었다고 보임.

다만, 정부에서도 換率제도의 개편이 국민경제 및 대외거래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편으로, 금융·자본·외환시장의 지속적인 육성발전과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러한 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換率제도를 개편할 계획으로 우선 지난해 9월 20일에 은행의 대고객 매매율을 일정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換率결정능력과 경험을 축적시키는 한편, 제2단계인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그동안 외환집중제도 개선 등 외환시장 기능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여건조성과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관계전문가와 긴밀한 협의 및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2월 초순에는 재무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외국환은행의 관계자 40명이 참여하는 모의연습을 거치는 등의 완벽한 준비를 하였음.

**〈문3〉**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수출부진과 물가불안 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왜 이와같이 경제가 불안정할 때 환율제도를 개편하려고 하는가.

**〈답〉** 최근과 같이 수출부진과 물가불안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봄.

그러나, 환율이 안정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한걸음 더 나아가 환율이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때 외환의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하여 환율이 적정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다만,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적정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기 위하여는 외환의 수요·공급기반이 확대되고 시장참가자의 수와 거래규모가 늘어나야 하며, 외환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 그동안 연관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제반준비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또한 제도상으로도 과도한 환율변동을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임.

한편 환율제도 개편은 현재의 제반경제여건은 물론 앞으로의 경제 전망 및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도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제반여건도 현재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문4〉** 현행 복수통화바스켓 제도와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 복수통화바스켓 제도에서는 통화바스켓, 즉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을 기초로 하여 외환당국이 기준율을 결정 고시하는데 반하여 새로운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는 국내외환시장에서 시장기능 즉 은행들끼리 원화와 달러를 사고파는 가격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문5〉**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가.

**〈답〉** 시장평균환율은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집중기준율과 같이 은행과 고객과의 외환거래나, 은행과 은행간 외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원화와 달러화와의 환율임.

시장평균환율은 전날 은행들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다른 은행들과 거래한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됨.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이 690원에 100만달러를 거래하고, C은행과 D은행이 693원에 50만달러를 거래하였다면 시장평균환율은  $690 \times 2/3 + 693 \times 1/3 = 691$ 원이 됨.

**〈문6〉** 시장평균환율제도로 가면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절하될 것인가.

**〈답〉**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對美환율이 결정되므로 금년중에 수출이 호조를 보여 외환의 공급이 많으면 외환시세가 내려가 원화는 절상이 될 것이고, 반대로 노사분규 및 수출부진이 지속되어 외환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원화는 절하요인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 경제의 동향에 따라 환율도 절상 또는 절하될 것임.

아울러, 차관등 해외자본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 이 또한 원화절상 요인이 됨.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의 수출입동향과 앞으로의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 절상 또는 절하에 대한 기대심리등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기초적으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친 종합수지에 의해 원화환율이 변동될 것임.

**〈문7〉** 시장평균환율제도로 가면 달러화 이외의 기타통화(예: 円貨)에 대한 환율은 어떻게 되나.

**〈답〉** 원화와 円貨의 환율은 현재와 같이 원화와 美 달러화와의 환율(시장평균환율)을 가지고 국제외환시장에서 형성된 美 달러화와 円貨와의 환율을 나누어서 결정됨.

예를 들어 시장평균환율이 688원이고, 1달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145円이 되었다면 100円은 474.48원(688÷145)이 됨.

**〈문8〉**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시행하면 시장 기능에 의해 원화가 円貨에 대해 절하될 것인가.

**〈답〉**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円貨에 대한 원화 환율은 원화와 달러화와의 환율을 달러화와 円貨와의 환율로 나누어서 결정되므로 (예를 들어  $₩ / ¥100 = ₩ / U\$ (688) \div ¥ / U\$ (145) = 474.48$ )

원화가 円貨에 대해 절하되려면 (예를 들어 100円 = 500원),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대폭 절하되거나 (예를 들어 1U\$ = 750원), 円貨가 달러화에 대해 대폭 절상되어야 함. (예를 들어 1U\$ = 137원)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시행한 후에 원화와 달러화와의 환율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고 상정하면, 현재와 같이 무역흑자국인 日本의 円貨가 약세를 보이는 이상현상이 지속된다면 원화는 円貨에 대해 절하되기가 어렵고, 반면에 주요 연구기관의 환율전망(WEFA1월호)과 같이 앞으로 円貨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다면

원화가 円貨에 대해 절하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마르크貨는 '89년초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인 관계로 원화가 마르크貨에 대해 대폭 절상되었으나, '89년말부터 마르크貨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원화가 마르크貨에 대해 오히려 절하되고 있음.

• W / DM : '88말 386.72 → '89.6.15 328.03(18% 절상)  
→ '89말 401.66(4% 절하) → '90.2.16 407.82(2% 절하)

**〈문9〉** 우리나라는 日本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円貨에 대해 원화를 절하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원화와 円貨의 환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원화와 달러화 환율, 달러화와 円貨환율, 원화와 円貨와의 삼각관계를 무시하고 우리나라만 日本 円貨에 대해 따로 환율(₩ / ¥100)을 정하는 경우에는 ① 우리나라 은행이 즉각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② 어느 특정한 나라에 대해 국제시세를 무시하고 환율을 차별적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IMF 8조국 의무(IMF 협정 제8조 제3항)와 상치되게 됨.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臺灣, 濠洲, 日本 등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도 美 달러화 이외의 기타통화 환율은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있음.

**〈문10〉** 시장평균환율은 어디에서 고시하고, 일반국민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 시장평균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에서 고시하고 일반은행들은 매일 09:00경 AP Telerate, 로이터 모니터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은행 또는 환율 자동응답장치(☎572-0011, 77#)를 통해 알 수 있음.

**<문11>** 기업이 수출대금을 영수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은행과 거래하는 換率은 어떻게 결정되나.

**<답>** 은행이 고객과 전신환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0.4%(달러화 이외의 통화는 0.8%)범위내에서 은행과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함.

**<문12>** 일반국민이 해외여행경비 등을 은행에서 환전할 때는 換率이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

**<답>**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화현찰 또는 여행자 수표를 은행에서 매입하는 절차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며, 이때 적용하는 換率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지는 점이 없음.

다만,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이 결정·고시하는 집중기준율에 일정한 수수료(*spread*: 현찰의 경우 통상 1.5%)를 더한 換率을 적용하여 은행이 해외여행자에게 외화를 매각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평균환율을 기준으로하여 수수료를 더하게 된다는 점만이 달라지게 되며, 이때 적용되는 수수료 자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임.

**<문13>** 시장평균환율제도로 가면 換率이 급변동하는 것이 아닌가.

**<답>** 꼭 그렇지는 않음. 물론, 시장평균환율이 은행간 거래환율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은행간 換率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장평균환율도 급변동하게 되지만, 우선 은행간 換率은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0.4%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시장평균환율은 아무리 크게 변동하여도 전날에 비해 0.4%변동(약 2.80원)에 그치게 되며, 근본적으로 현저한 외환의 수급불균형이나 과도한 換率변동이 있을 경우에

는 외환당국이 이를 조절하게 될 것이고, 또한 시장의 주체가 되는 외국환은행들도 서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일방이 換率을 급격하게 올려서 팔려고 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여야 거래가 성립되게 되므로 실제로는 換率이 급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문14>** 시장평균환율제도로 가면 美國으로부터 換率조작국 비난이 사라지는가.

**<답>**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공급에 의해 換率이 결정됨으로써 美國으로 부터의 비난 소지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임.

**<문15>** 시장평균환율제도로 가면 換率이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외국환평형기금)와 한국은행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게 되는가.

**<답>**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는 換率이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도 현행 바스켓換率제도하에서의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임.

즉,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의 외환당국의 역할은 바스켓제도하에서처럼 換率을 직접 결정·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 질서가 존중되는 가운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거래관행이 유지되도록 지도·감독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임.

또한,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공급이 급격한 수출부진 또는 거액의 차관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현저한 수급차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기능에 의하여 수요·공급이 조절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換率도 급격하게 변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외환 당국에서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급차를 조정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외환당국의 이러한 외환시장 조정내지 보완기능에 대해서는 IMF에서도 「자국통화의 환율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동하여 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외환당국의 이와같은 역할은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하여도 외환당국의 조정역할은 최소화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외환당국이 시장동향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외환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할 것임.

**<문16>** 시장평균환율제도 이행시기에 맞추어 외환집중제를 완화한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동시에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답>** 환율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평균 환율제도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기반이 크고 환율변화에 대해 탄력적이어야 함.

그러므로, 시장평균환율제도 이행시기에 맞추어 외환집중제를 완화함으로써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기반을 확대하고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

그런데,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① 외환시장의 구성원인 외국환은행이 외환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미 작년 9.20 외국환은행의 외환보유한도(포지션한도)를 대폭 확대한 바 있으므로, ② 이번 3월 1일부터 실시하는 외환집중제 완화조치는 외국환은행과 거래하는 수출입업체 및 기관투자자의 외화보유를 확대하는 것임.

**<문17>** 은행간 환율의 하루변동범위 0.4%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답>** 하루변동범위를 크게 설정하면(예 : 1%, 2.5%), 외환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기능이 제고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업계의 환율적응능력이나 과거의 환율 하루 변동폭을 감안할 때, 갑자기 은행간 환율변동폭을 크게하면 시장평균환율이 급변동하게 되어 많은 기업들 특히 예측능력과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는 달리 환율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보유외환도 거의 없고,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환위험 관리기법도 거의 알지 못하여 환율 급변동에 대처할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월초에는 수출이 부진하고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등 거래관행상 월중에도 환율기복이 많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업이 새로운 환율제도에 적응하여 거래관행이 정립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은행들도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초기단계에는 업계와 은행의 적응능력을 키워 주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한편, 은행간 환율의 하루변동폭을 0.4% 이내로 하더라도 이는 시장기능을 제약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처키 위한 것으로서, 0.4%, 즉 3원이면 시장실세 반영에 거의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음.(과거의 예를 보아도 하루에 3원 가까이 환율이 변동한 경우가 거의 없음.)

**<참고1>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변천추이**

- 1945. 10~1964. 5 : 고정환율제도
  - '45. 10. 1 美군정당국에서 1달러대 0.015원(당시 15圓)으로 정하여 시작됨.
  - 10여차례에 걸쳐 공정환율의 일시적인 환율인상조치를 시행함.
- 1964.5~1980. 2 : 단일변동환율제도
  - 對美환율을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률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고시하였음.
  - 그러나, 사실상 고정운용되어 오면서 4차례에 걸쳐 일시 대폭적인 환율인상조치가 수반됨.



	64. 5. 3	68. 12. 31	69. 11. 3	70. 12. 31	71. 6. 28	73. 12. 31	74. 12. 7	80. 1. 12
W/U\$	256. 53	281. 50	304. 35	316. 65	370. 80	397. 50	484. 00	580. 00

- 1980. 2~1990. 2 : 현행 복수통화 바스켓제도  
 - 對美환율은 국제통화시세변동, 국제수지추이, 내외금리차등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유동화가 시작됨.

※ 對美 환율 =

주요교역국인 美國, 日本 서독, 영국, 프랑스 등의 통화시세를 가중평균 바스켓환율	+	외환수급 · 내외금리차 등을 고려하여 가감 실제반영장치
--------------------------------------------------------	---	--------------------------------------

<참고 2>

현행제도 및 자유변동환율제도와 비교

	현행 (복수통화바스켓) 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 은행간 거래 및 대고객 거래의 기준이 되는 환율	- 한국은행 집중기준율	- 시장평균환율	- 별도의 기준율이 없음.
- 기준이 되는 환율(대미 환율)의 결정	• 일중 은행별, 시간대별 동일 - 주요국 통화가치변동, 국제수지 추이, 국내의물가차등을 감안하여 통화 당국이 결정	• 일중 은행별, 시간대별 동일 - 전일자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거래된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당일자 환율을 결정	• 일중 은행별, 시간대별 상이 - 거래당시의 외환의 수급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
- 은행간 거래환율	- 자율결정	- 일정범위내에서 자율결정	- 자율결정
- 기타 통화 환율의 결정	- 원화의 對美 환율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당해 통화간 환율을 재정하여 결정	- 좌 등	- 좌 등
- 기준이 되는 환율의 산출 고시기관	- 한국은행	-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	- 각 외국환은행
- 채택국가	- 濠洲 ('74.9~'83.12) - 韓國 ('80.2~ ) 등	- 台灣 ('82.9~'89.4)	- 美國, 日本, 英國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채택

## II. 외환집중제도 개선

### 1. 배경

-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외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 외환의 가격(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로의 이행과 함께
- 외환의 수요·공급기반을 확충하고 가격(환율)변화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외환집중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2. 현행 외환집중제도의 개요

- 현행 외환집중제도는  
 - 기업이 수출대금, 서비스제공대가, 수수료수입 등 대외거래에서 취득한 외환과 개인이 해외에 있는

친척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외환등 모든 외환을 국내에 회수하도록 하여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며 <해외외화보유 제한>

- 국내로 회수된 외환은 금융기관에 원화를 받고 팔거나(매각집중) 또는 외화상태 그대로 예금(예치집중)하도록 하고 <민간의 국내 집중의무>

- 또한, 금융기관도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예치받은 외환과 매각하거나 대출한 외환과의 차액(포지션)을 일정범위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 초과분은 다시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에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임.<은행의 국내집중의무> 다만, 해외증권투자가 허용되고 있는 기관투자가(증권, 투신, 보험사)는 일정도내에서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5천달러이내의 현금은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 이와같이 집중된 외환은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 기술도입 대가지급, 외채상환 등 필요한 용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 외환집중제는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외환을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기 위한 외환관리체계의 기본이 되는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3. 현행 외환집중제도의 개선 필요성

- 외환의 수요·공급이 외환시장에서의 가격기능에 의하여 원활히 조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 가격(환율) 자체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외환의 수요·공급이 가격(환율)변화에 탄력적이어야 함.
- 따라서,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 국내금융시장의 발전과 換率제도의 개편은 물론
  - 외환의 수요·공급기반 확충과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 수입제한의 완화, 외환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등 대외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 외환집중제의 개선으로 외환의 수요·공급에 대한 제도상의 제약이 해소되어야 함.

- 그러므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① 일차적으로 외환시장의 구성원인 외국환은행이 외환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미 작년 9.20 외국환은행의 외환보유한도(포지션한도)를 대폭 확대한 바 있으므로, ② 2차적으로 외국환은행과 거래하는 수출입업체 및 기관투자자의 자유로운 외환보유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외환집중제하에서도
  - 대외거래에서 취득한 외환을 예금형태로 보유하는 것은 거의 자유로우므로 큰 불편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 아직도 일부 외환은 매각과 보유(예금)간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 외화예금(예금형태로의 외화보유)에 대해서도 예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대외거래에서 취득한 외환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외거래 원활화의 측면에서도 외환집중제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

-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유로운 해외외화보유나 국내에서의 직접보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여건 및 자본거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집중제의 지속이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계속 집중의무를 부과하되, 외환시장 활성화 및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부터 외환집중제를 완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 4. 외환집중제도의 개선

#### (1) 국내집중의무 완화

가.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직접보유 허용

#### 개선 필요성

- 기업이 대외거래를 통해 수출대금, 서비스제공 대금 및 차입금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외화를 원화를 대가로 은행에 매각하거나 외화 그대로 예금을하여 보유할 수 있으나
- 대외거래에서 취득한 외환중 기한부 수출환어음은 사실상 예금이 불가능하여 매각할 수 밖에 없어 예금형태로의 보유가 실제로 불가능하므로, 만기시까지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모든 외환에 대하여 매각과 보유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

\* '88년중 기한부방식 수출 규모 : 약 97억달러

**개선 내용**

현 행

- 기한부수출환어음은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야 함(사실상 예금이 불가능함)

개 선

- 만기시까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직접 보유허용

나. 국내 외화예금제도 개선

**개선 필요성**

- 현행제도상 기업이 대외거래에서 취득한 외환에 대해서는 국내 외화예금이 자유로우나, 앞으로 있을 대외거래에 대비하여 외화예금으로 미리 보유할 목적으로 외화를 매입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음.

\* 국내외화예금 규모('89말 현재) : 7.6억달러

- 그러나, 기업들은 앞으로 있을 대외거래상의 환위험에 대비하여 선물환거래를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가지고 있는 원화로 소요외화를 미리 매입하여 보유할 필요성이 있으며,
- 또한, 향후의 대외거래에 대비하여 필요한 종류의 외화를 직접 매입하여 외화예금을 하는 것이 과거의 거래에서 획득한 외화를 예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다고 할 수 있음.

\* 日本은 '71. 6부터, 臺灣은 '87. 7부터 기업이 자국통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예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다만, 무제한 인정시는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여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단계에서는 우선 제한적으로 허용함.

**개선내용**

현 행

- 기업이 수출대금 등으로 취득한 외화만 예금허용
- 개 선
- 대외거래실적이 일정규모(연간 1억달러)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1천만달러 이내에서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정거래은행에 예금할 수 있도록 허용

\* '88년중 대외거래실적 1억달러이상 기업 : 125개

다. 집중의무 유예기간의 연장

**개선 필요성**

- 대외거래에서 취득한 외환을 매각하거나 예금(집중)하지 않고 직접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환율에 대한 외환의 수요·공급탄력성을 높이고 대외거래시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함.

**개선 내용**

현 행

- 5천달러 이내의 모든 외환은 20일(현찰은 10일)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매각 또는 예치

개 선

- 매각(예치)기간을 1개월로 연장(1개월 동안 외환의 직접보유를 허용하는 것과 동일)

(2) 해외외화보유제한 완화

가. 기업의 해외외화보유 허용

**개선 필요성**

- 기업의 대외거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거래내용도 복잡화, 비정형화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이 대외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외환의 보유 및 사용면에서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 해외외화보유 허용시에도 소위 「財테크」를 위한 거래는 제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

**개선 내용**

현 행

- 본사가 직접 해외에 외화를 보유하는 것은 불허(해외지사의 영업기금 보유,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해외투자만 허용)

개 선

- 우선 대외거래가 빈번하고 복잡한 종합상사(8개)에 대하여 제한된 금액(5백만달러)이내에서 해외에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해외보유외화로 해외에서 증권 및 부동산거래는 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정거래 은행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함.

나. 기관투자자의 해외외화보유 한도 확대

**개선 필요성**

- '88. 7 기관투자가(증권, 투신, 보험사)의 해외증권투자가 허용된 이후 투자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 기관투자가의 투자실적('89. 11말) : 67.9백만달러
- 앞으로도 換率의 안정, 내외금리차의 점진적 해소, 해외자본시장동향 등을 감안할 때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향후 자본시장의 국제화 진전에 따른 본격적인 해외증권투자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해외외화보유 한도의 확대가 필요함.

**개선 내용**

현 행

- 증권사는 3천만달러, 투신사 및 보험사는 1천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외화보유(증권투자)허용

개 선

- 해외증권투자실적, 자기자본규모, 국제업무취급여부 등을 감안하여 증권사는 5천만달러, 투신사 및 보험사는 3천만달러 이내에서 기관투자가별로 투자한도를 차등하여 확대.

**5. 외환집중제도 개선의 효과**

- 대외거래에 취득한 모든 외환에 대하여 매각과 보유의 선택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1개월동안은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할 수 있게 되고,
- 기업이 필요시 일정한도내에서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이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종합상사의 경우는 본사명으로 해외외화보유가 일정한도내에서 허용되고,
- 기관투자가의 해외외화보유(해외증권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 외환의 수요·공급기반이 확대되고 가격(환율)변화에 탄력성을 가지게 되어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되고,  
- 기업의 외화보유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져 원활한 대외거래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 향후 본격적인 해외증권투자에 대비한 경험축적이 가능하게 될 것임.

□ 明心寶鑑 □

當官者 必以暴怒爲戒 事有不可  
當詳處之 必無不中  
若先暴怒 只能自害 豈能害人.

〈관직을 맡은 관리는 반드시 사납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여,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음이 없거니와, 만일 먼저 사납게 화를 내면 단지 자신을 해칠 뿐, 어찌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랴〉

인간은 화가 나면 이성을 잃게 된다. 이와같이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리고 있을 때는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분노는 오직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칠 뿐이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는 참는 것이 제일이다. 화가 나거든 우선 심호흡을 세 번쯤 해 보라. 심호흡을 하면 화는

자연히 가라앉게 된다. 제퍼슨은 〈화가 났을 때는 말하기 전에 열을 세라. 더욱 화가 났을 때는 백을 세라〉고 말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다. 이 책의 戒性篇에서는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 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